

#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

의안 번호	122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3차(총인)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의거 건설중인 난지물재생센터 3차(총인) 처리시설이 2024. 3월 준공 예정으로,
- 나. 동 시설의 관리대행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으로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7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3차(총인) 처리시설
- 소재지 : 경기도 고양시 대덕로 426(현천동)
- 시설용량 : 439,200 $m^3$ /일
- 대행기간 : 2년 9개월(2024. 4. ~ 2026. 12.)
- 업체선정 : 공개경쟁입찰
- 소요예산 : 총 11,376백만원('24년 3,005/ '25년 4,125/ '26년 4,246)

### 나. 주요 관리대행 내용

- 3차(총인)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
- 3차(총인) 처리시설의 설비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
- 운영 조건별 운영인자 및 운영자료 정리·보고에 관한 사항

## 다. 관리대행 추진 근거

- 하수도법 제19조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-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(관리·운영의 관리대행)

## 라. 관리대행 추진 필요성

- '12년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(총인 2.0→0.5mg/L이하)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 중인 총인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종합시운전 후 인수 받아 운영하여야 하나,
- 직영 운영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총인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민간 전문업체에게 관리대행토록 하고자 함.
  - 조직담당관에 총인처리시설 소요인력 충원요청(운영과-400('23.2.13)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하수도법 제19조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
-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관리대행업자”라 한다)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·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
  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

-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

- 제7조(관리·운영의 관리대행)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·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능력이 있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공개경쟁입찰(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준용)

※ 작성자 :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이진호(☎ 300-8567)